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1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 알림

1. 「해운법」 제41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관련입니다.
2.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6년 1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지원 대상

- 1) 지원 기간: 2026년 1분기(2025년 12월 ~ 2026년 2월 구입분)
- 2) 대상 선박: 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 선박
- 3) 지원 대상: 실제 내항화물운송사업 수행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 혼합 블렌딩유는 경유 함유량을 산정하여 지급(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

4) 지급 단가

유류세보조금	경유세율 인하 연장에 따른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단가 변경 - '25.11.01 ~ '26.02.28 까지 경유(MGO) 1ℓ 당 292.665원 * 출하전표상 제조장에서 반출한 일자를 기준
유가연동보조금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 × 50% * '23. 4월 지원 종료 후 '23.07.11.~ '26.02.28. 구매분에 한해 재시행

*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의 판매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이므로 신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나. 신청 방법

- 1) 제출 서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BDR 등 관련 증빙 서류
- 2) 제출 기간: **2026.03.03.~ 03.09.**(우편 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리청 누리집(<http://www.portbusan.go.kr>) **알림소통 - 알림 - 공지사항**
☞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신청 서식), e나라도움 등록 절차 안내

3. 아울러, 유류세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①**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해운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른 ②**운항정지 또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처분 외에 해운법 제56조3항에 따른 ③**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6년 1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 1부.
2.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망) 등록 및 집행 절차 안내('26년 1분기) 1부.
3.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양식) 1부.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수신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부산에부산선주협회장



주무관 **김경언** 행정사무관 **윤인순** 과장 전결 2026. 2. 23. **정태섭**

협조자

시행 선원해사안전과-3043 (2026. 2. 23.) 접수

우 48755 부산광역시 동구 총장대로 351 (좌천동) 선원해사안전과 / <https://busan.mof.go.kr>

전화번호 051-609-6313 팩스번호 051-609-6319 / s8urs7@korea.kr / 대한민국 공개